

교원 징계 규정 <폐지 2021. 2. 28>

- 제1조(목적) <삭제 2021. 2. 28.>
- 제2조(적용범위) <삭제 2021. 2. 28.>
- 제3조(징계위원회)<삭제 2021. 2. 28.>
- 제4조(제척 등)<삭제 2021. 2. 28.>
- 제5조(위원장 선출 및 직무)<삭제 2021. 2. 28.>
- 제6조(간사 등)<삭제 2021. 2. 28.>
- 제7조(징계의 원칙) <삭제 2021. 2. 28.>
- 제8조(징계의 사유 및 종류)<삭제 2021. 2. 28.>
- 제9조(징계절차의 개시)<삭제 2021. 2. 28.>
- 제10조(징계의결의 기한)<삭제 2021. 2. 28.>
- 제11조(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)<삭제 2021. 2. 28.>
- 제12조(진상조사 및 의견진술권)<삭제 2021. 2. 28.>
- 제13조(징계의 양정)<삭제 2021. 2. 28.>
- 제14조(징계의결)<삭제 2021. 2. 28.>
- 제15조(징계의결의 재심사청구)<삭제 2021. 2. 28.>
- 제16조(징계사유의 시효)<삭제 2021. 2. 28.>
- 제17조(비밀누설 금지)<삭제 2021. 2. 28.>
- 제18조(보칙)<삭제 2021. 2. 28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25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원에게 부과된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판 또는 법원의 판결로 당해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어 다시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,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부 칙(2021. 2. 28)

이 규정은 2021년 2월 28일부터 폐지한다.

- [별표1] <삭제 2021. 2. 28>
- [별표1-2] <삭제 2021. 2. 28>
- [별표1-3] <삭제 2021. 2. 28>
- [별표2] <삭제 2021. 2. 28>
- [별표3] <삭제 2021. 2. 28>